순천시의회 공고 제2023 - 20호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폐지조례안
○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17. ~ 11. 2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1월 17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elang418@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4050호

발의연월일: 2023. 11. 16.

발 의 자: 최현아 의원, 정홍준 의원
장경순 의원, 양동진 의원
장경원 의원, 이복남 의원
최미희 의원, 이세은 의원
나안수 의원, 김태훈 의원

1. 개정이유

○ 저연차 공무원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를 확대함으로써 성실 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 양양

2. 주요내용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특별휴가 5일 부여 내용 신설(안 제14조제3항제1호가목)

○ 장기재직 휴가 확대(5일)

- **(현행)**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 **(개정)**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 유연한 휴가 사용을 위해 분할 사용 기준 내용 삭제(안 제14조제3항제2호)

3. 개정안: 별첨

4.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붙임 1】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재직기간별”을 “휴가일수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나 재직기간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중 “10일”을 “15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20일”을 “25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장기재직 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 총 일수 중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특별휴가) ① ~ ② (생 략) ③ 의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u>재직기간별</u> 휴가일수가 남아있을 때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휴가 일수 <u><신 설></u> <u>가.</u>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u>10일</u> <u>나.</u>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u>20일</u> <u>다.</u> (생 략) <u>2. 분할 사용 기준 : 1회 3일 이상 사용</u> ④ ~ ⑨ (생 략)	제14조(특별휴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휴가일수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나 재직기간별</u> ----------. 1. 휴가 일수 <u>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u> <u>: 5일</u> <u>나.</u>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u>15일</u> <u>다.</u>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u>25일</u> <u>라.</u> (현행 다목과 같음) <삭 제> ④ ~ ⑨ (현행과 같음)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5. **작성자: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⑭ (생략)

참고 2	기존조례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제정) 2022.01.12 조례 제2361호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법무규정

(일부개정) 2023.05.31 조례 제2552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2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

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3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별표 4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있을 때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5.31>

1. 휴가 일수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2. 분할 사용 기준 : 1회 3일 이상 사용

④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해 퇴직예정일 전 1개월을,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에 대해 퇴직 신청일로부터 1개월의 퇴직준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시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공무원(배우자를 포함한다)은 출산할 때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일의 범위에서 출산장려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⑨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1일의 기념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6조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경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4048호

발의연월일: 2023. 11. 16.

발 의 자: 장경순 의원, 정홍준 의원
최현아 의원, 장경원 의원
양동진 의원, 나안수 의원
박계수 의원, 강형구 의원

1. 개정이유

○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새마을회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지급 (안 제3조의2)

3. 개정안: 별첨

4. 관련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붙임 1】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붙임 2】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3조의2(회의수당)에 관한 사항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새마을회원 회의수당(1회 5만원 / 반기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총 비용(a-b)	-570,000	-114,000	-114,000	-114,000	-114,000	-114,000
세입(a)	-	-	-	-	-	-
세출(b)	570,000	114,000	114,000	114,000	114,000	114,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570,000	114,000	114,000	114,000	114,000	114,000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570,000	114,000	114,000	114,000	114,000	114,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예산: 114,000천 원 / 연

○ 산출기초

■ 새마을회원 회의수당

- 순천시 새마을회(5개 단체): 150명 × 50,000원 × 2회 = 15,000천원

- 읍면동 협의회・부녀회: 990명 × 50,000원 × 2회 = 99,000천원

6. **협의사항**: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해당 없음

8. **작성자: 순천시의회 의원 장경순**

참고 1	관련법령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약칭: 새마을조직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2	관련자료

❑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 지급 현황(전라남도 시·군)

지 자 체	지급여부	지급액(원)	조례 개정일	비고
순천시	X			
목포시	X			
여수시	○	30,000	2022. 12. 30.	분기별 지급 (회원 수 대비 60%만 반영)
나주시	X			
광양시	X			
담양군	X			
곡성군	X			
구례군	X			
고흥군	X			
보성군	X			
화순군	X			
장흥군	X			
강진군	X			
해남군	X			
영암군	○	60,000	2021. 10. 28.	전체 회원 지급 (1회 지급)
무안군	○	60,000	2021. 9. 10.	월 1회 지도자만 지급
함평군	X			
영광군	○	5만원 이내	2022. 5. 10.	미지급
장성군	X			
완도군	X			
진도군	X			

❑ 순천시새마을회 현황

1. 순천시새마을회(5단체) 회의현황

	순천시새마을회	협의회	부녀회	직장•공장	문고
인원	30명	25명	25명	40명	30명
회의 수(1년)	4회	12회	12회	6회	6회
평균참여인원	25명	22명	23명	32명	25명

2-1. 읍면동 협의회•부녀회 현황(24읍면동)

	읍면동 협의회	읍면동 부녀회	비고
인원	531명	459명	24개읍면동 합산
회의 수(1년)	12회	12회	읍면동별 월1회
평균참여인원	480명	420명	

2-2. 협의회•부녀회 읍면동별 세부 현황

	읍면동 협의회			읍면동 부녀회		
	인원	회의수(1년)	평균인원	인원	회의수(1년)	평균인원
승주	40	12회	36	25	12회	23
주암	20	12회	18	28	12회	24
송광	40	12회	36	23	12회	21
외서	30	12회	27	16	12회	13
낙안	35	12회	32	34	12회	31
별량	72	12회	65	59	12회	53
상사	17	12회	15	19	12회	18
해룡	33	12회	30	26	12회	24
서면	25	12회	23	38	12회	34
황전	13	12회	12	20	12회	18
월등	10	12회	9	17	12회	15
향동	13	12회	12	7	12회	6
매곡	15	12회	14	9	12회	8
삼산	22	12회	20	20	12회	18
조곡	17	12회	15	12	12회	11
덕연	15	12회	14	30	12회	27
풍덕	22	12회	20	10	12회	9
남제	25	12회	23	8	12회	7
저전	17	12회	15	6	12회	5
장천	9	12회	8	7	12회	6
중앙	17	12회	15	6	12회	5
도사	9	12회	8	16	12회	14
왕조1	10	12회	9	11	12회	10
왕조2	4	12회	4	11	12회	10

참고 3	기존 조례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정) 2008.05.09 조례 제1001호
(전부개정) 2016.03.09 조례 제162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 이란 순천시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순천시협의회, 순천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순천시지부, 직장새마을운동순천시협의회와 각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 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회원” 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순천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교육훈련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행사의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 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28호, 2016.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4051호

발의연월일: 2023. 11. 16.

발 의 자: 최현아 의원, 정홍준 의원, 장경순 의원, 장경원 의원, 양동진 의원, 이복남 의원, 최미희 의원, 나안수 의원, 김태훈 의원

1. 개정이유

○ 저연차 공무원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를 확대함으로써 성실 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 양양

2. 주요내용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특별휴가 5일 부여 내용 신설(안 제16조제3항제1호가목)

○ 장기재직 휴가 확대(5일)

- **(현행)**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 **(개정)**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 유연한 휴가 사용을 위해 분할 사용 기준 내용 삭제(안 제16조제3항제2호)

3. 개정안: 별첨

4.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붙임 1】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재직기간별”을 “휴가일수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나 재직기간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중 “10일”을 “15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20일”을 “25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장기재직 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 총 일수 중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특별휴가)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u>재직기간별</u> 휴가일수가 남아있을 때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휴가 일수 <u><신 설></u> <u>가.</u>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u>10일</u> <u>나.</u>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u>20일</u> <u>다.</u> (생 략) <u>2. 분할 사용 기준 : 1회 3일 이상 사용</u> ④ ~ ⑨ (생 략)	제16조(특별휴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휴가일수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나 재직기간별</u> ----------. 1. 휴가 일수 <u>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u> <u>: 5일</u> <u>나.</u>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u>15일</u> <u>다.</u>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u>25일</u> <u>라.</u> (현행 다목과 같음) <삭 제> ④ ~ ⑨ (현행과 같음)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5. **작성자: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⑭ (생략)

참고 2	기존조례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정) 1995.01.10 조례 제30호
(일부개정) 1996.04.15 조례 제207호
(일부개정) 1997.02.28 조례 제254호
(일부개정) 2000.02.21 조례 제494호
(일부개정) 2001.12.07 조례 제616호
(일부개정) 2002.05.01 조례 제631호
(일부개정) 2004.07.30 조례 제737호
(일부개정) 2004.12.30 조례 제758호
(일부개정) 2005.08.01 조례 제805호
(일부개정) 2005.10.17 조례 제817호 [시행일 : 2005.07.01]
(일부개정) 2006.06.30 조례 제856호
(일부개정) 2008.12.31 조례 제1055호
(일부개정) 2010.11.15 조례 제1186호
(일부개정) 2013.09.16 조례 제1374호
(일부개정) 2015.10.01 조례 제1547호
(일부개정) 2016.05.31 조례 제1655호
(일부개정) 2017.04.21 조례 제1720호
(일부개정) 2019.03.15 조례 제1976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2020.03.02 조례 제2094호
(일부개정) 2020.04.07 조례 제2105호
(전부개정) 2022.01.12 조례 제236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2023.03.31 조례 제253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순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율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며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 및 비상근무 등)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 근무자(일직, 숙직)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와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11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

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3조(해직된 공무원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공무원이 별표 4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있을 때 각각 1

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

1. 휴가 일수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2. 분할 사용 기준 : 1회 3일 이상 사용

④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해 퇴직예정일 전 1개월을,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에 대해 퇴직 신청일로부터 1개월의 퇴직준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시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공무원(배우자를 포함한다)은 출산할 때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일의 범위에서 출산장려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⑨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1일의 기념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순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박계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4052호

발의연월일: 2023. 11. 16.

발 의 자: 박계수 의원, 장경순 의원, 김태훈 의원, 김미연 의원, 최미희 의원, 양동진 의원, 최병배 의원

1. 제정이유

○ 물놀이, 수상레저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수상위기 발생 시 시민들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상 위기상황 대처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안: 별첨

4. 관련법령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 예산상황: 붙임 2

【붙임 1】

순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및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및 수영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대책
6.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수립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와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안 제6조(지원)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지원에 대한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5. 작성자: 순천시의회 의원 박계수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관련법령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약칭: 안전교육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전문개정 2010. 6. 8.]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9. 27.	체육과
2	원주시 아동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	2021. 7. 9.	보육아동과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23. 6. 2.	미래체육특수교육과
4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22. 1. 6.	안전기획과
5	고양시 아동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19. 7. 30.	아동보육과
6	광명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22. 10. 17.	교육청소년과
7	김포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23. 9. 27.	교육청소년과
8	남양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23. 6. 29.	미래교육과
9	부천시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23. 8. 14.	체육진흥과
10	안양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21. 2. 19.	교육청소년과
11	의정부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2023. 9. 22.	교육청소년과
12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23. 4. 10.	평생교육과
13	평택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22. 3. 2.	교육청소년과
14	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23. 8. 4.	체육진흥과
15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19. 4. 29.	체육건강과
16	거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23. 1. 6.	체육지원과
17	창원시 영유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20. 10. 12.	아동청소년과
18	통영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23. 10. 6.	시민안전과
19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18. 2. 14.	체육예술건강과
20	광주광역시 남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22. 2. 3.	교육체육과
21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치원 · 초등학교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23. 8. 1.	체육예술인성교육과
22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	2019. 10. 18.	
23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21. 10. 29.	평생교육과
24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17. 1. 11.	인성체육급식과
25	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19. 12. 26.	교육지원과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20.	교육지원과
27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22. 12. 29.	교육지원과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21. 7. 15.	미래교육과
29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19. 1. 3.	체육건강예술교육과
3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22. 12. 20.	민주시민교육과
3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19. 9. 26.	체육예술건강과
32	인천광역시부평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23. 9. 27.	평생교육과
33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23. 11. 13.	체육건강교육과
34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23. 5. 3.	체육과
35	완도군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19. 3. 8.	시설관리사업소

36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19. 5. 2.	체육건강과
3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18. 10. 11.	체육건강과
38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23. 8. 10.	체육건강과
39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019. 5. 17.	체육건강안전과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경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4054호

발의연월일: 2023. 11. 16.

발 의 자: 장경순 의원, 박계수 의원, 강형구 의원, 김태훈 의원, 최현아 의원, 양동진 의원

1. 제정이유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된 순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정 발전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보조금의 중복지원 금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3. 제정안: 별첨

4. 관련법령: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5. 예산상황: 붙임 2

【붙임 1】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순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순천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순천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경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안 제3조(지원사업)**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지원에 대한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5. 작성자: 순천시의회 의원 장경순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관련법령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조직)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5. 30.>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ㆍ도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개정 2011. 5. 30.>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1. 5. 30.>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 5. 30., 2020. 3. 31.>

[전문개정 2010. 7. 23.]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 5. 30.>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아래의 각호의 사항 및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1호 및 1-1호, 1-2호, 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 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 2	전라남도 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전라남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12. 31.	자치경찰정책과
2	강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8. 3.	총무과
3	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3. 26.	행정과 행정팀
4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2. 8.	총무과
5	무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9. 27.	자치행정과 단체협력팀
6	보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2. 16.	총무과
7	여수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5. 18.	총무과
8	영암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1.	자치행정과
9	장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9. 27.	자치분권팀장
10	장흥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2021. 7. 19.	총무과

※ 전국 지자체: 128개 시・도 및 시・군・구 제정(전라남도 포함)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057호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 제 출 일 : 2023. 11. 16.

1. 개정이유

○ 박람회 종료에 따른 순천만센터 재편 ➔ 신규시설 확대, 습지복원, 해양정원
○ 기획기능 일원화 ➔ 일류도시기획단으로 일원화
○ 정원후방산업 일원화 ➔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

2. 주요내용

○ 기구변동 세부내역

구 분		기구 변동 내역	비 고
4급 기구	명칭변경 (1)	• 순천만관리센터 → 정원도시센터	
5급 기구	명칭변경 (3)	• 기획예산실 → 예산실 • 국가정원운영과 → 정원운영과 • 정원산업과 → 정원시설과	

○ 사무분장 조정 내역

분 장 사 무	부 서 명	비 고
시 행정의 종합 · 기획 · 조정	기획예산실 → 일류도시기획단	
주요업무 계획 및 세부시행 계획 수립	기획예산실 → 일류도시기획단	
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처리	기획예산실 → 총무과	
광역행정 추진, 당정협의회 운영	기획예산실 → 자치행정과	
정원후방산업 육성	정원산업과 → 기술보급과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없음(의견청취 : 2023. 11. 6. ~ 11. 10.)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 생략
→ 행정내부적인 사항 규정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11. 7.(가족복지과-3063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11. 7.(기획예산실-1567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해당 없음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을 “예산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예산실장”을 “예산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융복합 메가 프로젝트 추진
4. 시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5. 주요업무 계획 및 세부시행 계획 수립

제5조제2항제13호부터 제41호까지를 제15호부터 제4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처리
14. 광역행정 추진, 당정협의회 운영

제17조에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정원후방산업 육성

제20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순천만관리센터”를 “정원도시센터”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사업소명란 중 “순천만관리센터”를 “정원도시센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 을 “예산실장” 으로 한다.

②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예산실장” 을 “예산실장” 으로 한다.

③ 순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 을 “예산실장” 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 을 “예산실장” 으로 한다.

④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 을 “일류도시기획단장” 으로 한다.

⑤ 순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예산실장” 을 “예산실장” 으로 한다.

⑥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 을 “예산실장” 으로 한다.

⑦ 순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 을 “예산실장” 으로 한다.

⑧ 순천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획예산실장” 을 “예산실장” 으로 한다.

⑨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제1호 나목 중 “기획예산실장” 을 “예산실장” 으로 한다.

⑩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 을 “예산실장” 으로 한다.

⑪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나목 중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을 “정원도시센터소장” 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시장 직속으로 일류도시기획단을 두고,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실을 둔다. ② (생 략) 1. 융복합 메가 프로젝트 추진(광역자원화시설 건립, 예술의 전당 건립 등) 2. ~ 3. (생 략) <신 설> <신 설> ③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주요업무 계획 및 세부시행 계획 수립 3. 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처리 4. 광역행정 추진, 당정협의회 운영 5. ~ 13. (생략)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 예산실 ----------. ② (현행과 같음) 1. 융복합 메가 프로젝트 추진 2. ~ 3. (현행과 같음) 4. 시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5. 주요업무 계획 및 세부시행 계획 수립 ③ 예산실장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5. ~ 13. (현행과 같음)
제5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② (생 략) 1. ~ 12. (생 략) <신 설> <신 설> 13. ~ 41. (생 략)	제5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12. (현행과 같음) 13. 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처리 14. 광역행정 추진, 당정협의회 운영 15. ~ 43. (현행 제13호부터 제41호까지와 같음)
제17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 37. (생 략) <신 설>	제17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 37. (현행과 같음) 38. 정원후방산업 육성
제20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제20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3. <u>순천만관리센터</u>
가. ~ 타. (생 략)
<u>파. 정원후방산업 육성</u>
하. ~ 처. (생 략)
4. ~ 5. (생 략)</td><td>3. <u>정원도시센터</u>
가. ~ 타. (현행과 같음)
<u>〈삭 제〉</u>
하. ~ 처. (현행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td></tr>
<tr><td>[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8조 관련)
<table><tr><th>사업소명</th><th>위 치</th></tr><tr><td>생태환경센터</td><td>순천시 이수로 13(장천동)</td></tr><tr><td>맑은물관리센터</td><td>순천시 강변로 77(교량동)</td></tr><tr><td><u>순천만관리센터</u></td><td>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47(오천동)</td></tr><tr><td>낙안읍성지원사업소</td><td>순천시 낙안면 충민길 30</td></tr><tr><td>문화예술회관</td><td>순천시 삼산로 16(석현동)</td></tr></table></td><td>[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8조 관련)
<table><tr><th>사업소명</th><th>위 치</th></tr><tr><td>생태환경센터</td><td>순천시 이수로 13(장천동)</td></tr><tr><td>맑은물관리센터</td><td>순천시 강변로 77(교량동)</td></tr><tr><td><u>정원도시센터</u></td><td>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47(오천동)</td></tr><tr><td>낙안읍성지원사업소</td><td>순천시 낙안면 충민길 30</td></tr><tr><td>문화예술회관</td><td>순천시 삼산로 16(석현동)</td></tr></table></td></tr>
</table>

참고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 · 군 · 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 · 군 · 구 본청의 실 · 국이나 과 · 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 ·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 · 군 · 구 본청에 두는 실 · 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 · 군 · 구 본청의 실장 · 국장과 과장 · 담당관의 직급과 실 · 과 · 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는 관할 시 · 군 · 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실 · 국과 실 · 과 · 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 · 도와 시 · 군 · 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 · 군 · 구의 실장 · 국장 · 담당관 · 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 · 군 · 구 본청에 두는 실장 · 국장 · 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 · 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u>시 · 군 · 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u>

1. 실 · 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 · 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2. 실장 · 국장 · 담당관 · 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실장(국장급) · 국장 ·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 · 과장 · 담당관	읍장 · 면장 · 동장	부읍장 · 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 · 군 · 구	4급	5급			
읍 · 면 · 동			5급	6급	6급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058호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 제 출 일 : 2023. 11. 16.

1. 폐지이유

○ **「경찰법」 전부개정**(2021. 1. 1. 시행) 및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상위 근거법령 폐지**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서 등과 **"자치경찰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및 필요한 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목적·기능의 **지역치안협의회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3. 폐 지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찰법」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치안행정협의회규정」(폐지규정)
○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5. **관련부서(기관) 의견** : 의견 있음

의견제출 부서(기관)	주 요 내 용
순천경찰서 (생활안전계)	지자체와 경찰 간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치경찰실무협의회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순천시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찬성함.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9. 15. ~ 10. 5.)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9. 8.(기획예산실-1247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9. 15.(순천시 공고 제2023-1971호)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059호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 제 출 일 : 2023. 11. 16.

1. 개정이유

○ 조례의 상위 법률과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상위 법률명과 조례명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 법률 제명 변경
-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변경: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안 제5조제3항)** 상위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 변경: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9. 27. ~ 10. 17.)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3. 9. 26.(가족복지과-26920호)
-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없음
-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없음
- ❍ 법제부서 심의필: 2023. 9. 26.(기획예산실-13407호)
- ❍ 법제부서 공고필: 2023. 9. 27.(순천시 공고 제2023-2084호)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를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순천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설치 기준은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제4조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068호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 제 출 일 : 2023. 11. 16.

1. 개정이유

○ 2018. 12. 24.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신설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공립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설치와 조례 개정 간 시차 발생 및 잦은 조례개정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현황 등 어린이집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 **(제2조 삭제)** 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9. 6. ~ 9. 26.)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11. 9.(가족보육과-2668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11. 9.(기획예산실-1228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11. 15.(순천시 공고 제2023-1948호)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2조(명칭과 위치)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td><td><삭 제></td></tr>
<tr><td><별표 1>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table>
<tr><th>연번</th><th>명 칭</th><th>위 치</th><th>비고</th></tr>
<tr><td>1</td><td>공립 풍덕어린이집</td><td>순천시 역전광장 3길 15(풍덕동)</td><td></td></tr>
<tr><td>2</td><td>공립 저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td><td>순천시 정충사길 5(저전동)</td><td></td></tr>
<tr><td>3</td><td>공립 선양어린이집</td><td>순천시 덕월1길 34(덕월동)</td><td></td></tr>
<tr><td>4</td><td>공립 강청어린이집</td><td>순천시 서면 강청길 134</td><td></td></tr>
<tr><td>5</td><td>공립 연향어린이집</td><td>순천시 연향2로 60(연향동)</td><td></td></tr>
<tr><td>6</td><td>공립 우석어린이집</td><td>순천시 서면 선평길 11</td><td></td></tr>
<tr><td>7</td><td>공립 낙안어린이집</td><td>순천시 낙안면 민속마을길 1690</td><td></td></tr>
<tr><td>8</td><td>공립 승주어린이집</td><td>순천시 승주읍 승평길 15</td><td></td></tr>
<tr><td>9</td><td>공립 동부종합복지관어린이집</td><td>순천시 장선배기길 18(조례동)</td><td></td></tr>
<tr><td>10</td><td>공립 가곡참샘어린이집</td><td>순천시 고지1길 57(가곡동,참샘마을휴먼시아)</td><td></td></tr>
<tr><td>11</td><td>공립 상사어린이집</td><td>순천시 상사면 응령동길 56</td><td></td></tr>
<tr><td>12</td><td>공립 신대어린이집</td><td>순천시 해룡면 매안4길 34</td><td></td></tr>
<tr><td>13</td><td>공립 오천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td><td>순천시 풍덕새길 37(풍덕동)</td><td></td></tr>
<tr><td>14</td><td>공립 신대푸르니어린이집</td><td>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2</td><td></td></tr>
<tr><td>15</td><td>공립 선평빛찬들어린이집</td><td>순천시 서면 선평동선길 36(선평빛찬들아파트)</td><td></td></tr>
<tr><td>16</td><td>공립 신대중흥7차에코누리어린이집</td><td>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50(중흥에코시티7단지)</td><td></td></tr>
<tr><td>17</td><td>공립 신대중흥8차에코둥이어린이집</td><td>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147(중흥에코시티8단지)</td><td></td></tr>
<tr><td>18</td><td>공립 신대중흥9차에듀힐스어린이집</td><td>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59-14(중흥에듀힐스9단지)</td><td></td></tr>
<tr><td>19</td><td>공립 신매곡어린이집</td><td>순천시 삼산초등길 20(매곡동, 신매곡 서한이다음)</td><td></td></tr>
<tr><td>20</td><td>공립 용당아이편한어린이집</td><td>순천시 용당삼산로 29(용당동, e편한세상 순천 1단지)</td><td></td></tr>
<tr><td>21</td><td>공립 신대중흥10차에듀하이어린이집</td><td>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79(중흥에스클래스에듀하이10단지)</td><td></td></tr>
</table>

</td><td><삭 제></td></tr>
</table>

참 고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안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4047호

발의연월일 : 2023. 11. 16.

발 의 자 : 나안수 의원, 장경원 의원
장경순 의원, 최현아 의원
양동진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의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순천시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다.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계획 및 지원사업 (안 제5조, 제6조)

라.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제정안: 붙임1

4. 관련법령: 「예술인 복지법」, 「문화예술진흥법」

5. 예산상황: 붙임 2(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
4. 거리공연가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6. 거리공연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순천시의회의원 나안수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관련법령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④ 모든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강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3. 30.	문화관광실
2	거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3. 30.	문화예술과
3	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2021. 2. 17.	문화관광과
4	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30.	문화관광과
5	광양시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2016. 9. 21.	문화예술과
6	광주광역시 광산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7. 17.	문화예술과
7	광주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8. 4.	문화관광과
8	광주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4. 24.	문화예술과
9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4. 17.	문화예술과
10	남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3. 9.	문화관광과
11	당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0. 29.	문화관광과
12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0. 29.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13	대구광역시 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1. 23.	문화관광과
14	대구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12.	관광복지국 문화교육과
15	대전광역시 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30.	문화체육과
16	대전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11.	문화체육과
17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19.	문화예술과
18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30.	문화관광과
19	부산광역시 금정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8. 10.	문화관광과
20	부산광역시 기장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2018. 11. 26.	문화체육과
21	부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2019. 6. 3.	문화미디어과
22	부산광역시 동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2. 8.	총무국 문화관광과
23	부산광역시동래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2018. 11. 12.	문화예술계
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8. 3.	예술담당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25	부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14.	문화체육과
26	부산광역시 수영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2018. 12. 19.	문화관광과
2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2. 28.	문화체육과
28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2016. 4. 19.	문화관광과
2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2015. 10. 1.	문화관광과
30	부여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9. 17.	문화체육관광과
31	부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20.	문화예술과
32	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9. 21.	문화체육과
33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30.	문화관광체육과
34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3. 10.	문화정책과
35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 12. 30.	문화관광과
36	속초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3. 15.	문화체육과
37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8. 9.	문화예술과
38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1. 15.	문화관광과
39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2020. 12. 24.	문화관광과(문화예술팀)
40	양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2021. 12. 27.	문화체육과
41	여수시 거리문화공연사업 관리 및 지원 조례	2018. 3. 6.	문화예술과
42	옥천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2020. 12. 30.	문화관광과
43	울산광역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1.	문화예술과
44	울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9. 11.	문화체육과
45	의정부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30.	문화예술과
46	인천광역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 19.	홍보문화실
47	인천광역시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2022. 10. 17	문화관광과
48	인천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2023. 7. 21.	문화관광과
49	전라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2018. 12. 31.	문화예술과
50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8. 9.	문화정책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51	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1. 27.	문화영상팀
52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5. 17.	문화예술과
53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2020. 8. 10.	문화정책과
54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21. 4. 9.	문화예술산업과
55	통영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22. 12. 26.	문화예술과
56	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2. 22.	문화체육과
57	해남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2021. 9. 15.	문화예술과
58	홍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3. 15.	문화예술
59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5. 17.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60	무안군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20.	문화체육과
61	나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22. 9. 20.	관광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62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1. 10. 6.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63	동해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0. 16.	경제관광국 문화관광과
64	충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3. 6.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65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7. 10. 19.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66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3. 10.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67	아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조례	2017. 3. 6.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68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30.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69	광주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4. 20.	문화체육실 문화정책관
70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19. 11. 6.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71	대전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17. 12. 29.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72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2023. 6. 9.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73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2. 28	자치행정국 문화홍보과
74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29.	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75	울산광역시 중구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9. 27.	미래전략국 문화관광과
76	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0. 19.	미래환경국 문화체육과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최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4049호

발의연월일 : 2023. 11. 16.

발 의 자 : 최미희 의원, 이복남 의원, 김미연 의원, 양동진 의원, 김태훈 의원, 김영진 의원, 나안수 의원, 서선란 의원, 이세은 의원, 유영갑 의원, 최현아 의원, 신정란 의원

1. 제정이유

○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측정장비 지원, 대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다. 안전한 식재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제정안: 별첨

4. 관련법령

○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

○ 「환경보건법」 제20조

5. 예산상황: 붙임 2(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측정장비”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안전도나 오염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4.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시민의 쾌적한 삶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측정장비 지원) ① 시장은 시민들이 측정장비를 대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측정장비를 시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는 대여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측정장비 대여)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측정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1. 세슘, 아이오딘, 라돈 등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2. 잔류농약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3. 소음, 악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측정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측정장비의 대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안전한 식재료의 지원) 시장은 안전급식 식재료 사용의 확대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에 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등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안 제4조(측정장비 지원)와 안 제5조(측정장비 대여)의 추진 비용 등의 소용가 예상됨.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순천시의회 의원 최미희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관련법령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식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 6. 1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생산·제조·가공·조리·포장·보존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식품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과학적 기준을 세워야 하며, 「세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1. 8. 4.>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복적인 출입·수거·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보건법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②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2014. 3. 24.>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경상남도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2019. 12. 26.	여성가족국 가족지원과
2	광양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검사에 관한 조례	2021. 7. 9.	농식품유통과
3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2017. 1. 5.	여성아동과
4	군포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2014. 5. 20.	교육체육과
5	담양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2023. 9. 25.	농업유통과, 환경과
6	무안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31.	농정과 먹거리전략팀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2018. 3. 5.	보육지원과 보육지원팀
8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2022. 12. 28.	위생관리과
9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2023. 9. 21.	위생과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2015. 4. 23.	교육지원과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2013. 12. 12.	보육여성과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공급에 관한 조례	2023. 9. 27.	교육미래과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2015. 12. 29.	여성보육과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2. 24.	교육지원과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5. 25.	교육지원과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6.	미래교육과
17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31.	식품정책과

18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2014. 9. 24.	가족정책과
19	양산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2018. 4. 17.	위생과(위생관리팀)
20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2016. 6. 9.	농수산과
21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2022. 9. 20.	위생과
22	천안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2016. 7. 1.	식품안전과

순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김태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4053호

발의연월일 : 2023. 11. 16.

발 의 자 : 김태훈 의원, 장경순 의원, 최현아 의원, 정광현 의원, 최미희 의원, 양동진 의원, 박계수 의원, 나안수 의원, 오행숙 의원, 유승현 의원

1. 제정이유

○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사업의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마.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바.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제정안: 붙임1

4.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
○ 「평생교육법」 제16조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5. 예산상황: 붙임 2(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순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경비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문)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순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사업 지원(안 제6조)에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원함으로써 재정 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2개소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지원액 추계 산정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환경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액 추계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1,245,500	-227,500	-254,500	-254,500	-254,500	-254,500
세입(a)	845,500	227,500	154,500	154,500	154,500	154,500
세출(b)	2,091,000	455,000	409,000	409,000	409,000	409,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3,582,000	710,000	718,000	718,000	718,000	718,000
국비	100,000	100,000	0	0	0	0
도비	745,500	127,500	154,500	154,500	154,500	154,500
시비	1,245,500	**227,500**	**254,500**	**254,500**	**254,500**	**254,500**
도교육청	1,491,000	255,000	309,000	309,000	309,000	309,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프로그램	참여인원	예 산 액			비고
			합계	국비	시비	
합계	74	2,249	300,000	100,000	200,000	
2023년	44	1,249	200,000	100,000	100,000	
2024년	30	1,000	100,000	0	100,000	국비지원 안됨

○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현황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공동체 환경조성(직접 운영)
  - 8개사업 31,111천원(장애인단체 네트워크, 역량강화, 양성과정 등)
- 장애 단체 유형에 따른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민간보조)
  - 18개 단체 35개 프로그램 126,078천원(기초문해, 직업능력 프로그램 등)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

(단위 : 천원)

연도별	합 계				팔마장애인평생교육원				팔마장애인평생교육원			
	합계	도비	시비	교육청	합계	도비	시비	교육청	합계	도비	시비	교육청
합 계	1,128,000	282,000	282,000	564,000	609,000	845,250	152,250	304,500	519,000	822,750	129,750	259,500
2023년	510,000	127,500	127,500	255,000	300,000	75,000	75,000	150,000	210,000	52,500	52,500	105,000
2024년	618,000	154,500	154,500	309,000	309,000	77,0250	77,250	154,500	309,000	77,0250	77,250	154,500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

○ 문화관광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팀장

참고 1	관련법령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5.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6. 9.	
2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18.	
3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8. 3.	기획조정실 교육인재담당관
4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19. 4. 15.	
5	공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3. 8.	평생교육과
6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9. 25.	평생학습원
7	광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0. 4.	교육청소년과
8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2. 3. 10.	교육체육과
9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0. 3. 20.	노인장애인복지과
10	광주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0. 4. 1.	교육정책관
11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3. 5. 1.	교육체육과
12	김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 9. 24.	경로장애인과
13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2.	교육청소년과
14	나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12.	교육지원과
15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2. 8. 4.	평생교육과
16	남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2. 5. 12.	평생학습과
17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0. 29.	평생학습과
18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2016. 12. 30.	
19	동두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3. 18.	평생교육원
20	동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0. 7. 10.	평생교육센터
21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1. 4. 12.	노인장애인과
22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	2018. 9. 19.	창조교육과
23	삼척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1. 4. 16.	평생교육과
24	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3. 9. 25.	평생학습원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2. 4. 28.	장애인지원과
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7. 25.	장애인사회보장과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3. 7. 13.	장애인동행과

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2. 3. 2.	사회복지과
29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0. 6. 3.	사회복지과
30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3. 11. 9.	시민교육과 시민교육팀
31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2. 12. 30.	평생교육과
32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9. 21.	교육지원과
33	속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19. 11. 1.	경로장애인과
34	아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0. 12. 15.	평생학습관
35	안동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9. 24.	평생교육과
36	안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19. 7. 5.	장애인복지과
37	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3. 3. 13.	교육체육과
38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9. 27.	평생교육과
39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1. 6.	평생교육과
40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6. 17.	행복교육과
41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2. 1. 3.	교육지원과
42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2. 4. 8.	
43	이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3. 27.	교육청소년과
44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19. 4. 10.	교육지원과
45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	2021. 4. 9.	
46	전라북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1. 4.	
47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17. 2. 28.	장애인복지과
48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1. 4. 14.	평생교육정책과
49	진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9. 17.	평생학습센터
50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1. 12. 13.	교육청소년과
51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30.	
52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1. 10. 1.	
53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17.	평생교육과
54	포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3. 5. 24.	교육지원과
55	홍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2. 10. 11.	행정복지국 교육체육과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061호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 제 출 일 : 2023. 11. 16.

1. 개정이유

○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 개정(시행 2024.1.1.)으로 청년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청년 연령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

○ 인구 고령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 일자리 정책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년 인구유출 방지 및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호) 청년 정의 변경

-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으로 통일되도록 변경하고자 함.

- 현 행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 개 정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청년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0. 16. ~ 11. 5.)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10. 13.(가족복지과-28307호)
- ❍ 예산부서 심의필 : 2023. 10. 13.(청년정책과-10801호)
-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10. 15.(기획예산실-14164호)
-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10. 16.(순천시 공고 제2023-2167호)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이란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 6.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청년”이란 「순천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 6.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연계 정비로 비용 발생 없음

5. **작성자**

○ 미래산업국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749-4403)
	청년일자리팀장	서영상(☎ 749-5742)

참고	관련 법령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 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 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 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 이란 경제 · 사회 · 교육 · 복지 · 문화 ·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 란 경제 · 사회 · 교육 · 복지 · 문화 ·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 이란 경제 · 사회 · 교육 · 복지 · 문화 ·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 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065호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 제 출 일 : 2023. 11. 16.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관련,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누수예방을 위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

○ 경비지원 절차가 명시된 관련 법·조례 등이 준용될 수 있도록 정비

2. 주요내용

○ **(안 제5조 ~ 제6조)** 재정・운행에 대한 지원 사항
- 모호한 조문 개정

○ **(안 제8조)**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경비지원 사항 추가

○ **(안 제9조)** 준용에 관한 사항
- 관련 법·조례 등을 준용할 수 있는 사항 신설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0. 16. ~ 2023. 11. 6.)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10. 10.(가족복지과-2777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9. 26.(기획예산실-1342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10. 16.(순천시 공고 제2023-2142호)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된 비용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제6조제2호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으로 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홍보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재정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에 대한 지원) ---------.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된 비용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신 설>	3.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8조(홍보 및 교육) ①·② (생 략)	제8조(홍보 및 교육) ①·②(현행과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홍보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안명 :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는 조례안 제5조 ~ 제8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등 비용 발생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비용 발생은 제5조(재정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8조(홍보 및 교육)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그 비용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5. 작성자

미래산업국 기후에너지과 과장 허성실 (☎ 749-5571)
팀장 안순미 (☎ 749-6525)
담당 위대량 (☎ 749-6526)

참고	관련 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 · 공급 · 판매 또는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 · 생산을 위한 연구 · 조사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 ·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066호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 제 출 일 : 2023. 11. 16.

1. 개정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지원금의 관리 등)의 개정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특별회계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

2. 주요내용

○ 조례 제9조(존속기한) 삭제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0. 18. ~ 11. 7.)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11. 6.(가족복지과-3053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3. 10. 16.(기획예산실-14211)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10. 16.(기획예산실-27844)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10. 18.(순천시 공고 제2023-2181호)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삭 제>

참고	관련 법령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홍보사업에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出捐)한 것으로 본다.

□ 지방재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073호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 제 출 일 : 2023. 11. 16.

1. 개정이유

❍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 및 신축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정정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기간, 농기계 운송지역 및 출고시간을 명시하여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증진과 효율적인 임대사업을 진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농기계 임대사업소 소재지 수정(안 제2조)
❍ 임대사업소 운영기간 명시, 농번기철 토요일 운영 명시(안 제5조)
❍ 농기계 운송가능지역 및 출고시간 명시(안 제7조)
❍ 임대사업소 명칭 통일(농기계 임대사업장 → 농기계 임대사업소)
❍ 별지 서식 내용 중 임대차계약조건 추가 및 수정(별지 제2호서식)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0. 5. ~ 2023. 10. 26.)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10. 4.(가족복지과-27263호)
-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9. 26.(기획예산실-13416호)
-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10. 5.(순천시 공고 제2023-2108호)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 ·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사업장"을 각각 "임대사업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순천시 승주읍 유흥길 48(순천시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나. 순천시 지현길 96(덕월동) 혁신농업인센터 내(순천시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다. 순천시 외서면 쌍향수길 369-12(순천시 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제5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기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농번기철(4월~6월, 10월~11월)은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 편의를 위해 토요일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9시까지"를 "9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현장 도착"을 "농기계 운송 지역은 관내에 한하며 농기계 출고시간"으로, "사용개시일 오전 9시까지"를 "6시까지, 사용개시일 오전 8시 이후"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농번기, 공휴일, 연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입출고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중 "임대사업장"을 "임대사업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제6조 관련)

임 대 인	임 차 인	
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북부(승주읍) : 061)749-4681 남부(덕월동) : 061)749-4888 서부(외서면) : 061)749-4875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임대차 농업기계

농기계명		수 량	대
부 속		수 량	대
작 업 기		수 량	대
임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금 원		

농업기계 사용계획

기 계 명		작업종류	
마 력		작업장소	
기대번호		작업면적	㎡ (평)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기간 동안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한다.
2. 임차인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한정하며, 동일한 경영체에 등록된 경우 1인만 임차할 수 있고, 반드시 본인이 임차하여야 한다.(계약서 작성 시 신분증 제시)
3. 임차기간 동안만 농기계 종합보험을 적용한다.(사용개시 전일 출고 및 사용만료일 경과 반납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농기계 종합보험 적용받지 못한다.)
4. 임차인은 임차기간 시간 내에 농기계를 출고하고 반납한다.
5. 음주,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농기계를 작동 · 운전해서는 안된다.
6.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농업기계를 깨끗이 세척한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7. 사용 후 보관 시에는 비나 눈을 맞지 않도록 보관한다.
8. 농작업 이외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
9.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한다.
10. 임차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변상한다.
11.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12. 임차인이「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 · 운영 조례」및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추후 농업기계 임대를 1년 이상 제한한다.
13.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권고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으로 농기계 사고시 농업인 부담 경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 서류 제출시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 대 인 : 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 농기계임대사업소 ○○○ (인)

임 차 인 :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및 순회수리반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가. 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628 농업기술센터 내 나. 순천시 덕월동 지현길 96(덕월동) 농업교육관 내 <신 설> 2. (생 략)	제2조(위치) ------ 임대사업소 ----------. 1. ------ 임대사업소 가. 순천시 승주읍 유흥길 48(순천시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나. 순천시 지현길 96(덕월동) 혁신농업인센터 내(순천시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다. 순천시 외서면 쌍향수길 369-12(순천시 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 2.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 ⑦ (생 략) <신 설>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기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농번기철(4월~6월, 10월~11월)은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 편의를 위해 토요일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 및 임대기준 등) ①·② (생 략) ③ 임대농업기계를 사용자가 직접 운반할 경우 출고는 사용개시일 오전 9시까지로 하고 입고는 임대 만료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전날 출고를 원하고	제7조(사용자 및 임대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9시부터----------. ----------

현 행	개 정 안
임대 가능한 농업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전날 오후 5시 이후에 출고할 수 있다.	----------.
④ 임대농업기계 운반을 원하는 사용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임대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운송한다. 다만, **현장 도착**은 사용개시 전일 오후 5시부터 **사용개시일 오전 9시까지**로 하고, 회수는 임대만료일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운반 예정시간을 사전에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 --- **농기계 운송 지역은 관내에 한하며 농기계 출고시간**은 사용개시 전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사용개시일 오전 8시 이후**----------.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농번기, 공휴일, 연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입출고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 및 부품대금) ①·② (생 략)	**제8조(임대료 및 부품대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에서 OCR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카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방법 중 선택하여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 **임대사업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제6조관련)

임 대 인	임 차 인	
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북부(승주읍) : 061)749-4681 남부(덕월동) : 061)749-4888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임대차 농업기계

농기계명		수 량	대
부 속 작 업 기		수 량	대
		수 량	대
임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금 원		

농업기계 사용계획

기 계 명		작업종류	
마 력		작업장소	
기대번호		작업면적	㎡ (평)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농업기계를 깨끗이 세척한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에는 비나 눈을 맞지 않도록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자)
3.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한다.
5. 임차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변상한다.
6.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7. 임차인이「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및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추후 농업기계 임대를 제한한다.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권고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으로 농기계 사고 시 농업인 부담 경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 서류 제출시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 대 인 : 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 차 인 : (인)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제6조관련)

임 대 인	임 차 인	
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북부(승주읍) : 061)749-4681 남부(덕월동) : 061)749-4888 서부(외서면) : 061)749-4812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임대차 농업기계

농기계명		수 량	대
부 속 작 업 기		수 량	대
		수 량	대
임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금 원		

농업기계 사용계획

기 계 명		작업종류	
마 력		작업장소	
기대번호		작업면적	㎡ (평)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기간 동안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한다.
2. 임차인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한정하며, 동일한 경영체에 등록된 경우 1인만 임차할 수 있고, 반드시 본인이 임차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신분증 제시)
3. 임차기간 동안만 농기계 종합보험을 적용한다.(사용개시 전일 출고 및 사용만료일 경과 반납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농기계 종합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4. 임차인은 임차기간 시간 내에 농기계를 출고하고 반납한다.
5. 음주,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농기계를 작동 · 운전해서는 안된다.
6.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농업기계를 깨끗이 세척한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7. 사용 후 보관 시에는 비나 눈을 맞지 않도록 보관한다.
8. 농작업 이외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
9.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한다.
10. 임차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변상한다.
11.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12. 임차인이「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 · 운영 조례」및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추후 농업기계 임대를 1년 이상 제한한다.
13.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권고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으로 농기계 사고 시 농업인 부담 경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 서류 제출시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 대 인 : 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현 행	개 정 안
	○○농기계임대사업소 ○○○(인) 임 차 인 : (인)

참고	관련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070호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 제 출 일 : 2023. 11. 16.

1. 폐지이유

○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이나 현재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져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폐지조례 시행일 부칙에 명시 : 2024년 1월 1일

○ 조례 시행 전에 발생된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2023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일반회계에 귀속 ※ 2023년도 예산액 1,080,863천원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9. 15. ~ 2023. 10. 6.)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9. 12.(기획예산실-1269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9. 12.(순천시 공고 제2023-1984호)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발생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2023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순천시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072호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 제 출 일 : 2023. 11. 16.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개최 실적이 저조한 한옥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안 제4조제4항) 한옥위원회 비상설화
-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함

❍ (안 제4조제5항, 제6항)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한 조항 삭제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0. 16. ~ 11. 6.)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10. 26.(가족복지과-29577호)
-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9. 26.(기획예산실-14187호)
-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10. 16.(순천시 공고 제2023-2169호)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설치 · 운영한다”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업무팀장”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 · 운영하고, 심의 ·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한옥의 보존·건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순천시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설치 및 구성) ① ----------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디자인국장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디자인국장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⑥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⑦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주택관련 업무팀장	⑤ ---------- 업무 담당 공

으로 한다.	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5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제4조 제6항의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제5조(심의대상) ----------.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 4.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③ (생 략)	제6조(회의) <삭 제> ①·②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주요내용이 「위원회의 비상설화」이므로,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 개정 내용이 없음

5. 작성자

○ 도시디자인국 건축과 과 장 정상택(☎749-6202)
건축행정팀장 이순영(☎749-6369)

참고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요약)

< 기본 방향 >

정비 대상				정비 방안
법령상 임의위원회 / 조례상 위원회	신설 위원회			신설 최대한 억제
	미개최위원회	· 3년간 미개최	⇨	폐지
		· 1년간 미개최	⇨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
	비효율위원회 * 연 3회 미만 개최,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	· 기능 유사·중복	⇨	통·폐합
		· 기능 독립	⇨	(목적달성) 폐지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내부안건) 협의체 전환 (존속필요·안건少) 비상설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행안부→해당부처, 법령정비 요청)		· 미개최 · 비효율	⇨	(사전) 사전협의제도 활성화 (사후)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검토

1. 미개최 위원회

□ 3년간(’ 20～’ 22년간) 미개최

○ (정비방안) 자체적 폐지

○ (절차) 지자체 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 개정 또는 폐지

□ 1년간(’ 21년) 미개최

○ (정비방안)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제출

○ (절차) 위원회 기능·필요성에 대한 자체 검토 후, 활성화 또는 정비

2. 비효율 위원회

□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 (정비방안)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폐합

○ (절차) 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 필요

- (의무설치 위원회에 통합) 의무설치 위원회의 명칭 사용, 의무설치 위원회의 근거 조례상 기능 보강 및 통합 관련 규정 신설
- (임의·조례위원회 간 통합) 조례에 통합 관련 규정 신설 필요

○ (정비유형) 단순 통폐합 또는 통합 후 분과위 구성

- 원칙적으로 단순 통폐합 추진
- 다만, 독자적 심의가 필요하여 단순 통폐합이 곤란한 경우,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하위 분과위원회로 편제항을 다루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

□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① (폐지) 목적 달성, 수요 해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설치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폐지

② (존속기한 설정)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 영구 존속의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최대 5년)을 조례에 명시

③ (협의체 전환)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안건을 주로 심의하여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는 관계부서 협의체로 전환

※ 예시 : 표창·포상 관련 공적심의,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심사 등 부단체장, 실·국장, 소속 공무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

④ (비상설화) 제도적 절차, 주민 안전 등 필수적 사항을 다루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

3.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 (정비대상) 3년간(’19～’21년간) 미개최 또는 비효율적 운영 위원회

○ (정비방안)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검토

○ (절차) 지자체에서 정비계획 제출, 행안부에서 해당 위원회 소관 부처에 위원회 근거법령 정비 요청 및 협의 추진